

낙시통제구역 지정 고시

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6조 및 「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낙시문화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낙시통제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.

2019년 07월 08일

완 도 군 수

1. 낙시 통제구역 지정 내역 : 8개소 (위치도 : 붙임)

명 칭	위 치	면적(㎡)	비 고
완도대교	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~ 완도군 군외달도 일원	13,500㎡(500m)	
신지대교	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~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일원	14,280㎡(840m)	
장보고대교	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~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일원	20,250㎡(1,350m)	
고금대교	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~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	10,640㎡(760m)	
약산대교	완도군 고금면 화성리 ~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원	3,672㎡(306m)	
보길대교	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~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일원	6,820㎡(620m)	
소랑대교	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~ 완도군 금일읍 소랑리 일원	3,200㎡(200m)	
소안1교	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~ 완도군 소안면 구도리 일원	6,240㎡(780m)	

2. 낚시통제구역 지정 사유

-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
-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
- 교량유지 관리 확보

3. 낚시 통제 기간 : 24시간, 연중

4. 낚시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- 근거 :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55조 제1항 제1호
- 벌칙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1차 위반 20만원, 2차 위반 40만원, 3차 이상 위반 80만원)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완도대교 일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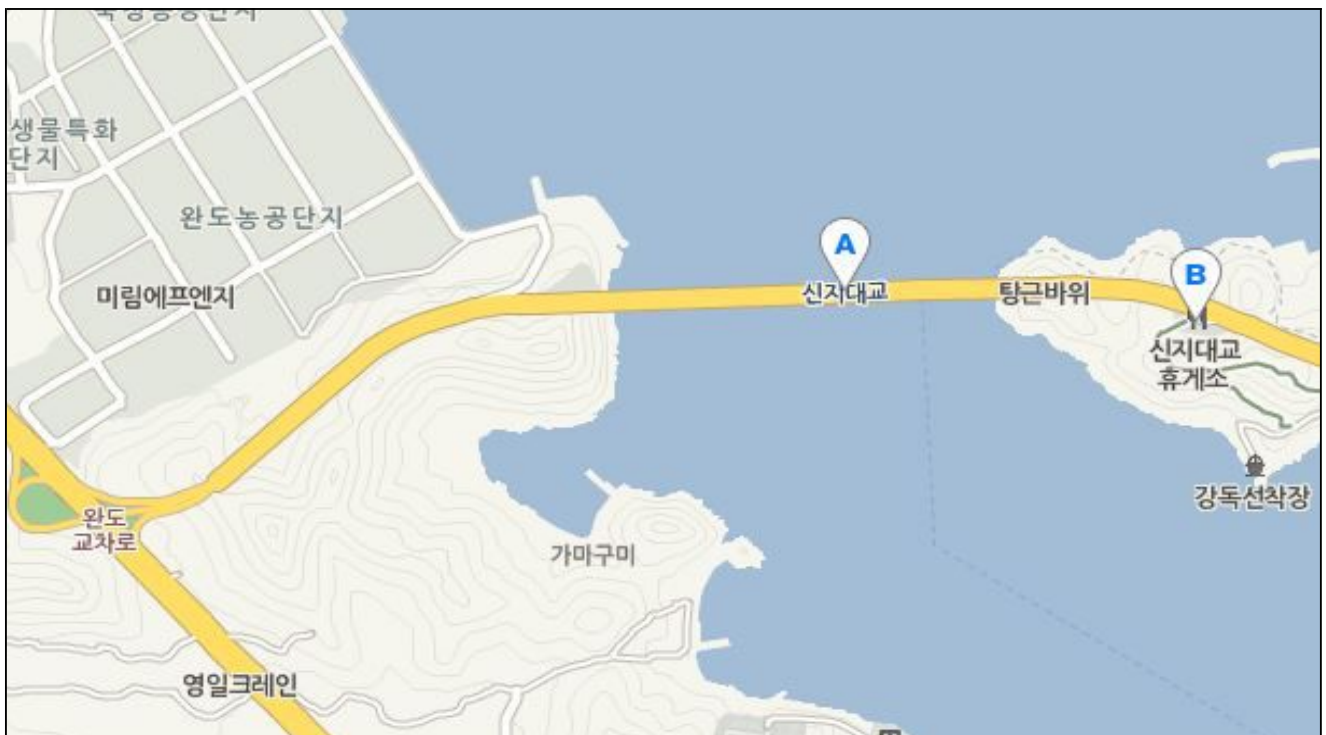
〈면적 : 13,500㎡(500m)〉

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신지대교 일원

〈면적 : 14,280㎡(840m)〉

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장보고대교 일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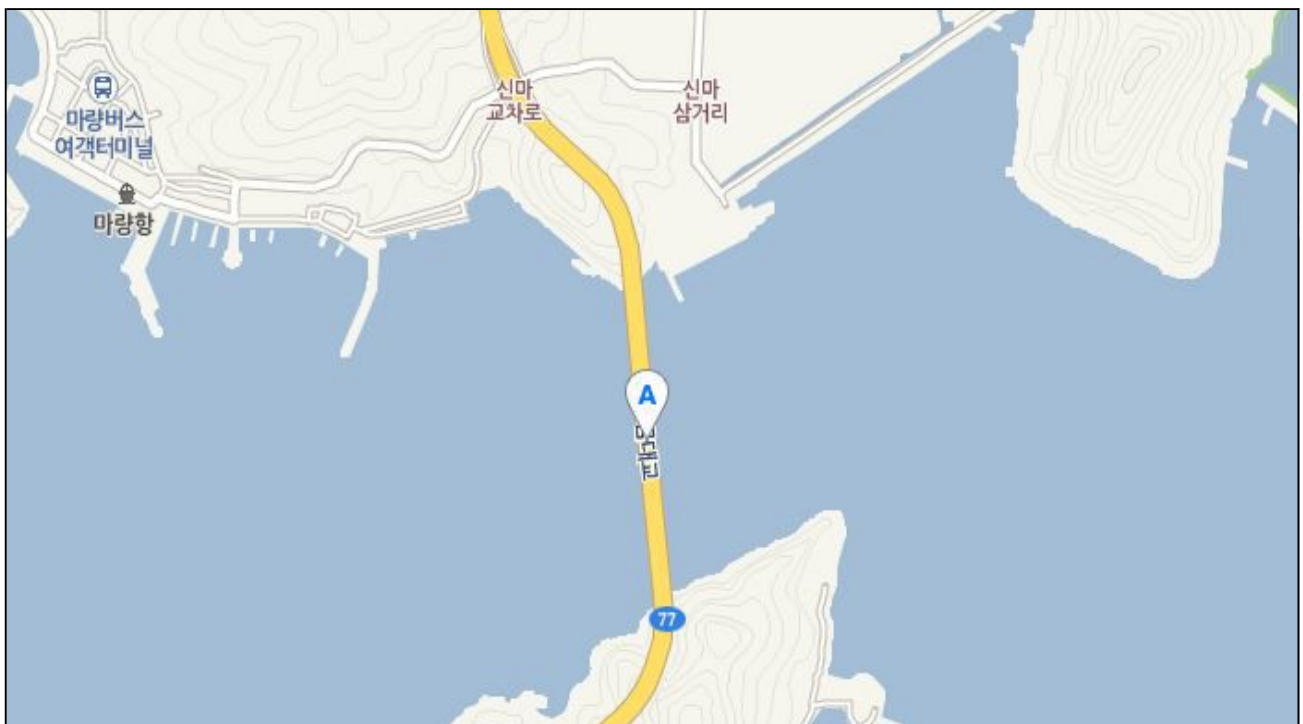
<면적 : 20,250 m²(1,350m) >

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고금대교 일원

<면적 : 10,640 m²(760m) >

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약산대교 일원

〈면적 : 3,672㎡(306m)〉



【 붙임 1 】: 위치도

□ 위치 : 보길대교 일원

〈면적 : 6,820㎡(620m)〉



【붙임 1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소랑대교 일원

〈면적 : 3,200㎡(200m)〉



【붙임 1】: 위치도

□ 위치 : 소안1대교 일원

〈면적: 6,240㎡(780m)〉

